

중부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8월 10일
중부지방국세청장

1 임용예정인원 (2개 직위, 총 2명)

임용예정직렬(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세무주사 (일반임기제)	1명	체납추적분야	채용일로부터 1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
	1명	조사심의분야	채용일로부터 1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임용예정직렬(직급)	채용분야	담당 업무
세무주사 (일반임기제)	체납추적분야	○ 강제징수 회피를 위한 각종 편법행위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 탈루·면탈행위에 대한 조세 형사사건 업무지원 및 수행
	조사심의분야	○ 조사 사전심의 및 불복대응 업무 ○ 각종 조사 쟁점 법률 자문 및 소송업무 공동 수행

※ 임용 예정 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 요건 [분야별 구분모집, 중복지원 불가]

채용분야	응시요건(필수 자격요건)
송무, 조사심의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제4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2026.9.21.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6.8.24.) 기준]

우대요건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우대 (기간별 차등우대) ○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우대 ○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 우대 (건수별 차등우대)
------	--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6.8.24.예정)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근무경력 :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 (기간별 차등우대)
 - *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고 근무기간,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당 ○○시간 근무),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경력이 불명확(간략)하게 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붙임2 직무기술서 상에서 요구하는 주요업무와 일치하는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하며,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 근무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 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자격증 소지자 : 세무사법 제3조 제1호 및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취득 여부
 - * 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른 배점 부여
-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 우대(직접 수행 건수별 차등 배점)
 -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수행한 사건, 동일한 원고·피고에 대해 여러 심급 수행 시 1건으로 간주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또는 7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직무연관성, 우대요건 등

응 시 자	6배수 초과 ~ 10배수 이하	10배수 초과
합 격 자	6배수	7배수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소통·공감(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헌신·열정(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창의·혁신(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윤리·책임(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8.10.(월) ~ 8.24.(월)	'26.8.20.(목) ~ 8.24.(월)	'26.9.11.(금)	'26.9.21.(월)	'26.10.8.(목)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중부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8. 20.(목) ~ 8. 24.(월)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세무주사(일반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증' 기재

● 등기우편접수 주소 및 연락처

채용분야	주소(접수처)	접수담당자 연락처
체납추적분야	(1620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	031) 8012-7903
조사심의분야	(1620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031) 888-4085

-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제출)

- ①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별지 1호 서식>
- ②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7,000원 상당 부착) <별지 2호 서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③ 이력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별지 3호 서식>
- ④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별지 4호 서식>
-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별지 5호 서식>
-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 ⑦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 ⑧ 학위증명서 및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각 1부
 * 시험위원 위촉 시 시험위원과 응시자의 학연을 배제하기 위한 용도이며, 시험위원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 ⑨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⑩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조세·회계·법률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간 00시간 근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2인 이상의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여 기재

- ☞ 경력증명서 기재내용이 미비할 시 경력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 * 경력을 필요로 하는 우대요건의 경우 반드시 제출

- ② 우대사항 관련 취득 자격증(국내) 사본 1부

- ③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증빙자료

- * 직접 수행한 소송수행 실적 검증용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등을 출력하여 제출
개인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중 경력(응시요건 및 우대요건)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경력 및 재직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 1개 자격득실이력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면접시험일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1부(경력 확인용)

-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 1개(예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소득금액 증명원 1부(국세청 발급)

-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hometax.go.kr), 세무서 무료발급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논문, 학위 및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10. 12. ~ 11. 11.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 11월말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채납추적분야) 채용일로부터 1년
 - (조사심의분야) 채용일로부터 1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임기제 직급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6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6급	81,945	41,288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는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보가 가능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사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①번)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②번) ⇒ 폐업 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The image displays two screenshots of the HomeTax website interface. The left screenshot shows the '전체메뉴' (Main Menu) with the '증명·등록·신청' (Verification, Registration, Application) section expanded. Under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Fact Confirmation after Confirmation), the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option is highlighted. The right screenshot shows the '증명·등록·신청' section expanded, with the '즉시발급 증명' (Immediate Issuance) option highlighted. Both screenshots show a list of available certificates on the right side, including '근로(자녀)경력금 수급사실 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서(국세납세증명)', '모범납세자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원사업장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소득금액증명', and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

- 기타 문의사항은 각 채용분야별 접수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 ①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 분야>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분야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	세무주사 (일반임기제)	체납추적 분야

주요 업무	○ 조세소송 등 불복대응 지도·관리 및 소송업무 직접 수행 ○ 판례 등 결정사례의 분석 ○ 각종 조세불복 관련 법률 자문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집행관리능력, 전문성, 정보관리능력
----------	---

필요 지식	○ 세법·회계분야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전문지식 ○ 세무행정·회계·불복청구와 관련한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 ○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을 위한 탁월한 식견
----------	---

응 시 자 격	구 분	응시요건
	변호사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요건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우대 (기간별 차등우대) ○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우대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 우대 (건수별 차등우대)
----------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심의분야>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분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세무주사 (일반임기제)	조사심의분야

주요 업무	○ 조사 사전심의 및 불복대응 업무 ○ 각종 조사 쟁점 관련 법률 자문 ○ 중요 행정심 대응 지원 · 관리 및 소송업무 공동 수행 ○ 중요 쟁점 관련 연구 · 토론 및 직원 교육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집행관리능력, 전문성, 정보관리능력
----------	---

필요 지식	○ 세법 · 회계분야에 대한 이론적 · 법률적 전문지식 ○ 세무행정 및 각종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사건과 관련한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
----------	---

응 시 자 격	구 분	응시요건
	변호사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요건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 · 회계 · 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우대 (기간별 차등우대) ○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우대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 우대 (건수별 차등우대)
----------	--

임신·출산 및 육아 친화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시제도 소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임산·출산 및 육아 지원

 인사혁신처

 **1. 임신·출산 환경 지원** ①

◆ **휴직** ◆

① **질병휴직**

임신중독증 등 임신 관련 질환 및 보임 임신 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치료를 위한 병원진료 중 임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신에 관련된 경우에도 복직이 필요합니다. 다만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 대하여는 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임신 전]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육아보내미 아니나 여성공무원이 임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출산 전까지 경우 중, 출산후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출근이 되기 전에는 육아휴직 중에는 출산후가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출산 시, 만사휴가로 복직신청을 하여 복직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 ◆

① **[임신 전] 난임휴가·시술휴가**

③ 여성공무원의 난임수술 시술 시 총 2일, 체외수정 시술 시 총 3~4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여성공무원의 전자 체외수정 휴가 하중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난임 휴가	수정휴가
여성	부검 또는 부검 예정인 경우: 체외수정 시술 난임전 체외수정 시술	2일 4일
남성	전자 체외 수정	1일

② **[임신 후] 임신전진통가**

⑤ 임신한 여성공무원 임신전진통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총 10일 임신전진통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⑥ 임신전진통가는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임박수 조산 위험, 조산 산행 시 임신박탈 등 임신을 해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임신·출산 환경 지원 ②

① 임신·출산 보육후보지선

-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월 21일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한 의료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기간에 사육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모성보호기간이란 시·군·구·자치단체(이하 「간접 고용」 제외)의 8명, 출산일 전 120일 후 145일 전까지 임신 시 50일 이상에 대하여 한달 휴가기간 부여, 의료비나 진단서에 의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임신 전·후 출산휴가

- ▶ 임신 출산 전·후 공무원에게 출산 전 3개월 후를 통하여 30일의 출산휴가(이하 120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임신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하인 임신 시 50일 이상에 대하여 한달 휴가기간 부여, 의료비나 진단서에 의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임신 후(배우자) 출산휴가

- ▶ 배우자가 임신·출산한 임신 시 10일, 대타자를 출산 시 15일의 배우 출산휴가(이하 120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배워의 임신·출산 휴가

- ▶ 배우자의 임신·출산 휴가 90일(이하 120일) 이후 범위에서 18일(이하 28일) 한도의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인사관리

① 임신 공무원별 출산·조산·기타 내보 허용

- ▶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시, 필수조산·기타 내보 허용한다.

② 임신 공무원별 정가리·정가리 출장 제한

- ▶ 기간정원 산정·공무원별 정가리 또는 정가리 출장을 제한할 수 있으나, 다만, 임신 중(임신)이 산행하는 공무원의 정가리 또는 정가리 출장 가능한다.

③ 임신·출산 공무원 이연 및 휴직 근무면제 조치

- ▶ 기간정원 산정·출산·출산 후 휴가 1년(이하)임용 공무원에게 이연·출산·출산 후 휴가 1년(이하)의 시간과 휴가(이하)임용 공무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 임신·출산 공무원 산행 제한

- ▶ 다만, 임신 중(임신)이 산행하는 공무원의 산행 또는 출산 후 휴가 1년(이하)임용 공무원에게 산행 제한을 할 수 있다.

2. 임신·출산 물적 지원

◆ 맞춤형 복지 ◆

① **난임 치료비 지원**

- ◆ 난임 진단 시 난임 시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자금 총 1,000원(100만원) 지원한다.
- ◆ 총 1,000원(100만원) 지원한 이후에도 난임 진료에 한해 1회(월 500,000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총 2회 지원 가능하다.

② **태아·신로 결핵비 지원**

- ◆ 임신·출산 시 결핵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자금 총 2,000원(20만원) 지원한다.
- ◆ 출생 자녀 결핵 시에는 2,000원(20만원), 셋째 자녀 이상 결핵 시에는 3,000원(300만원)의 지원금 지급된다.
- ◆ 결핵에 대해 시·군·구에서 출산 지원금 지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자녀 출생 축하금 지급**

- ◆ 출생 자녀 출생 시에는 2,000원(20만원), 셋째 자녀 이상 결핵 시에는 3,000원(300만원)의 지원금 지급된다.
- ◆ 결핵에 대해 시·군·구에서 출산 지원금 지급을 지원할 수 있다.

◆ 공무원연금공단 지원 사업 ◆

④ **공무원 연금부채**

- ◆ 출생 첫 자녀 출생 시 증가한다. 시·군·구 공무원연금회생재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 공무원 연금에 대해 연 1%의 이자를 지급한다. 복리대금 3%이 있으며, 행정복지직은 다른 대금 1%를 더 지급한다.

⑤ **연대보증금 지원을 받기 위한 시·군·구 지원**

- ◆ 대금 신청 시, 출생 첫 자녀 출생 시에는 출생 후 2년 이내이며, 둘째 출생 시에는 출생 후 3년 이내, 셋째 출생 시에는 출생 후 4년 이내로 지원한다.

⑥ **공무원 연금부채**

- ◆ 공무원 연금부채 발생 시 시·군·구 공무원연금회생재단에 가장 먼저 지원한다. 일부 중대 해산 시 임신·출산금 지원 100만원(2년) 연금 지원 가능하다.

⑦ **공무원 연금부채**

- ◆ 공무원 연금부채 발생 시 시·군·구 공무원연금회생재단에 가장 먼저 지원한다. 일부 중대 해산 시 임신·출산금 지원 100만원(2년) 연금 지원 가능하다.

⑧ **공무원 연금부채**

- ◆ 공무원 연금부채 발생 시 시·군·구 공무원연금회생재단에 가장 먼저 지원한다. 일부 중대 해산 시 임신·출산금 지원 100만원(2년) 연금 지원 가능하다.

⑨ **공무원 연금부채**

- ◆ 공무원 연금부채 발생 시 시·군·구 공무원연금회생재단에 가장 먼저 지원한다. 일부 중대 해산 시 임신·출산금 지원 100만원(2년) 연금 지원 가능하다.

⑩ **공무원 연금부채**

- ◆ 공무원 연금부채 발생 시 시·군·구 공무원연금회생재단에 가장 먼저 지원한다. 일부 중대 해산 시 임신·출산금 지원 100만원(2년) 연금 지원 가능하다.

[illegible]

4. 육아 물적 지원 ①

자녀 수당 ◆ ◆ ◆

① **자녀 수당**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당 가족구성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첫째 자녀는 3만원, 둘째 자녀는 2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1만원씩 지급 됩니다.
※ 월별 지급액 4만원 이상 15만원 미만까지 단계로 지급됩니다. 다만, 전 15개월 이상 산하 자녀를 양육한 경우는 단계없이 지급됩니다.

② **육아휴직수당**
350일 미만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기간에 상응한 월임금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86일 금액의 소수반올은 15만원, 하한선은 70만원입니다.

③ **육아휴직차상금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당 1년입니다.

부양공무원의 월임금 지급 대상으로는 배우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 인정

부양공무원의 월임금 지급대상(육아휴직 대상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첫 출생일까지는 월임금분 100%(상당 17만원)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반올)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 2023년 4월 1일부터

④ **육아휴직수당**은 종래에 매월 지급되던 금액에서, 나머지 19%는 부양공무원의 월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19%는 육아휴직수당 지급 방식 상의 변경으로 종래에 지급되던 육아휴직수당 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합니다.

◆ ◆ ◆ 맞춤형 복지

① **가족복지 부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당 가족구성원이 매년 부여됩니다. 첫째 자녀는 50만원(50만원), 둘째 자녀는 100만원(100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200만원(200만원) 지급됩니다.

② 가족합정 지원 기금은 가족구성원 3명 지급과 동일합니다.

4. 육아 물적 지원②

◆ ◆ ◆ 공무원연금공단 지원 사업 ◆ ◆ ◆

① **가족학 연대대부**

● 만18세 미만 아동, 2차녀 이상 아동,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등은
 행복도약대학을 방문 수 있습니다.

미리확인서 및 2차녀 이상 양육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

2024년 기준으로, 미확인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제외하고, 2차녀 이상 양육을 기록한 2월 28일 이전"으로
 그 후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1명 이상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② **공무원 임대주택**

● 입주자 선정 시, 미성년 및 영유아 자녀 양육 가정은 가점이 부여됩니다.
 ● 입주층에 6대 미만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을 육아하거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 시,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에 영유아 자녀 가임 어떻게 부여되는지?

10대 미만 자녀 양육에 관계해서는 3차녀 이전은 15점, 2차녀는 10점,
 1차녀는 5점이 부여됩니다.
 10대 미만은 5점이 부여되고, 6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영유아 양육 시에
 양육 개월은 중복 적용되며, (단) 최초 입주 시에 적용됩니다.

③ **출산 육아 지원사업**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출산 육아 교육 프로그램, 육아캠프행동, 헌법
 복귀프로그램 등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세부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연세복지정보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 어린이복지지원센터	
 이웃대상 만 18세이하의 5대 취약계층의 가정방문사업 업무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19~30세 교육요청자 자녀	 이웃지원 평일 09:00 ~ 19:00, 토요일 09:00 ~ 15:30
 대표	 ▲ 서울시 아동복지 608호 부구청장(정호근) 240 ▲ 02-262-2016 ~ 2017 ▲ www.seoulwelfare.com
 대안	 ▲ 서울시 아동보호지원센터(서울아산) 아동안전 및 상담 ▲ 044-866-2017
 활동	 ▲ 서울시 아동보호 11 2호(서울아산) 1-2층 ▲ 044-866-1942 ▲ seoulcc.or.kr
 유아복지	 ▲ 서울시 아동복지 11 2호(서울아산) 1-2층 ▲ 044-864-8123 ▲ www.seoulcc-child.or.kr
 아동보호	 ▲ 서울시 아동보호 102 ▲ 129-1102(서울아산) 1층 ▲ 044-719-7087 ▲ www.seoulwelfare.com
 아동상담	 ▲ 서울시 아동보호 477 ▲ 아동가족지원센터 1층 ▲ 044-889-3540 ▲ www.seoulwelfare.com
 발달장애	 ▲ 서울시 아동보호 408 ▲ 145(서울아산) 1-2층 ▲ 044-866-9131 ▲ www.seoulwelfare.com
 문화	 ▲ 서울시 아동보호 402 ▲ 126-1102(서울아산) 1층 ▲ 044-719-7025-9 ▲ www.seoulwelfare.com
 연락처	 ▲ 서울시 아동보호 494 ▲ 59(서울아산) 1층 ▲ 044-262-1918 ▲ www.seoulwelfare.com
 지도	 ▲ 서울시 아동보호 190 ▲ 193(서울아산) 1층 ▲ 044-866-1554 ▲ http://seoul-cc.or.kr
 투표권	 ▲ 서울시 아동보호 200 ▲ 200(서울아산) 1층 ▲ 021-527-0272 ▲ www.seoulwelfare.com
 연락처	 ▲ 서울시 아동보호 200 ▲ 200(서울아산) 1층 ▲ 021-750-6400 ▲ http://hansik.vixion.net
 연락처	 ▲ 서울시 아동보호 388 ▲ 388(서울아산) 3층(구립) ▲ 021-504-7441 ▲ www.gskdc.or.kr
 연락처	 ▲ 서울시 아동보호 477 ▲ 477(서울아산) 1층 ▲ 021-3679-3745 ▲ www.purani.com/ccr
 연락처	 ▲ 서울시 아동보호 189 ▲ 189(서울아산) 3층 북관 ▲ 042-719-0882 ▲ www.daeumids.com
연락처	▲ 서울시 아동보호 189 ▲ 189(서울아산) 3층 북관 ▲ 042-483-2117 ▲ www.daeumids.com
연락처	▲ 서울시 아동보호 477 ▲ 477(서울아산) 3층 북관 ▲ 042-472-2200 ▲ www.shkdc.or.kr
연락처	

* 관련 정보는 인사혁신처(mpm.go.kr) 홈페이지(새소식-간행물-“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꿈모임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성 명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부서)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작성 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2. 응시원서	
3. 이력서	
4. 자기소개서	
5. 직무수행계획서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7.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8. 학위증명서 및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각 1부 * 시험위원 위촉시 시험위원과 응시자의 학연을 배제하기 위한 용도이며,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9.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0. 자격증 사본(변호사·회계사·세무사)	
11.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우대요건)	
12.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증빙자료(우대요건)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주사(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중부지방국세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채용분야)	세무주사(일반임기제공무원) (중부지방국세청 ○○○○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여/부	응시요건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중부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채용분야)	세무주사(일반임기제공무원) (중부지방국세청 ○○○○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중부지방국세청장 ㉠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 작성 시(아래 내용에 따라 작성)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3.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4.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부' 기재
5.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전자수입인지는 뒷면에 첨부)
－ 세무주사(일반임기제공무원) : 7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6. 응시직급(채용분야) : '세무주사(일반임기제공무원) 중부지방국세청 ○○○○분야'
정확한 응시 분야명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경력경쟁채용 이력서

가. 공통 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채용분야 (직급)	중부지방국세청 ○○○○분야 세무주사(일반임기제)	성명	
----------	----------	--------------	-------------------------------	----	--

나. 응시요건(변호사 자격에 관한 사항)

자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변호사	'00.00.00.	

다. 우대사항 ※공고문 상 우대요건 해당자만 기재(증빙서류 첨부)

◇ 관련분야 근무경력(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경력)

근무기관(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00.00.00 ~ '00.00.00 (00년 00월 00일)	과장(4급)		주당 00시간 근무

◇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기재)

구분	사건번호	직접 수행자	관련 내역
			(조세 연관성 초점 두어 간략히 작성)

※ 직접 수행한 소송수행 실적 검증용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등을 출력하여 제출
개인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인)

【작성요령】

-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②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할 것
 - ※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와 경력요건에 해당됨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시하고 간략하게 기재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③ 근무연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21.04.01 ~ '22.05.10 (1년 1월 10일)
 - ※ 현재 근무중인 경우 경력(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26.8.24.)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함
- ④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⑤ 직위(급) 기재시 반드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상 공식직함을 기재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작성
- ⑥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 다만, 경력요건에 정확히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 ⑦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예시) 임기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별지 제4호 서식】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특별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
- 지원동기, 생활신조, 가치관, 미래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고, 매 페이지마다 쪽번호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반드시 기재

2026. . . 작 성 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특별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되, 시험공고에 명시된 임용예정부서의 담당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하고, 매 페이지마다 쪽번호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반드시 기재

2026. . . 작 성 자 : (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사본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중부지방국세청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여부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관할 출입국·외국인 청(사무소)</u>	공무원 채용 관리	<u>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u>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u>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u>	공무원 채용 관리	<u>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u> 에 필요한 사항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확인
-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중부지방국세청장 귀하